

투자위험등급 :
3 등급
[중간 수준 위험]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한국밸류 10 년투자 재형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에 대한 투자 설명서의 내용중 중요 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밸류 10 년투자 재형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한국밸류 10 년투자 재형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AG072)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채권혼합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식회사 (02-3276-6000)
4. 판 매 회 사 : 집합투자업자(www.koreavalueasset.com) 및 금융투자협회(kofia.or.kr)

홈페이지를 참고

5. 작 성 기 준 일 : 2014 년 4 월 30 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4 년 6 월 20 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속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koreavalueasset.com, 02-3276-6000)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4 및 동법 시행령 제 92 조의 13 에 따른 재형저축으로서, 일부 환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가입 후 7 년 이전에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 등의 인출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됨으로써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최초로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 년이 도래하는 때 1 회에 한하여 3 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 등의 인출시 연장한 기간 및 연장 이전 7 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이 투자설명서는 정식투자설명서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여 정식투자설명서의 표현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4 및 동법 시행령 제 92 조의 13 에 따른 재형저축으로서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 200] x 0.27) + ([CD 금리] x 0.73)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채무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권 거래시장의 흐름을 27% 반영하고 채권을 포함한 기타 유동성 자산의 흐름을 73% 반영한 아래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 운용전략

| 구분 | 내용 |
|---------------|--|
| 주식부문 | 기업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성장가치 대비 적정가격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여 적정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추구합니다. |
| 채권 및 유동성자산 부문 | 국채, 통안증권, 우량회사채 등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주로 주권에 투자하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채무증권, 파생상품, 수익증권, 기업어음,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투자·운용합니다. |

(2) 위험관리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단계별로 운용인력, 준법감시인 및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수시로 점검하여 위험관리를 합니다.

3.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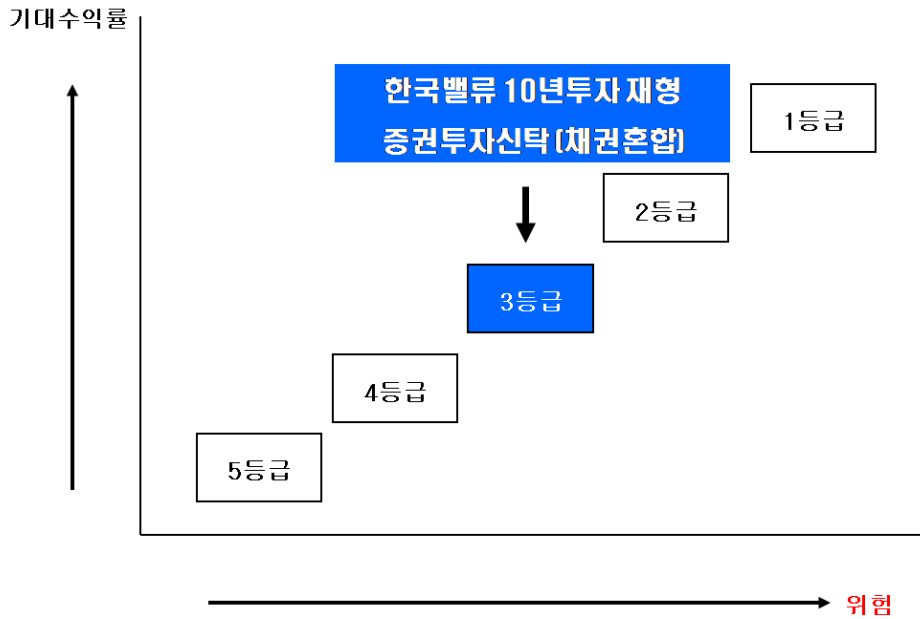
| 일반위험 |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종목의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
| 금리변동위험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시장위험 | 신탁재산을 주권, 채무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신용위험 | 이 투자신탁은 주권, 채무증권 투자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50%이상 90% 범위내에서 국채, 통안채 등 채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추구를 기본으로 하면서, 신탁재산의 30% 범위 내에서 저평가된 주식 등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투자신탁으로서 5 등급중 3 등급에 해당하는 중간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국공채에만 투자하는 MMF 및 국공채펀드나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투자신탁 등보다 높은 투자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투자를 통한 실세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반면 주식시장 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5. 운용전문인력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2014.04.30)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 |
| 이채원 | 1964 | 부사장 (CIO) | 15 | 41,790 억 | -중앙대 경영학과 -동원투신운용(1996 ~ 2000) -한국투자증권(2000 ~ 2006)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06 ~ 현재) |
| 정신욱 | 1980 | 대리 | 13 | 41,465 억 | -연세대 경영학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07 ~현재)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자산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내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2014.04.30)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 |
| 배준범 | 1973 | 자산 운용 1 본부장 | 15 | 41,790 억 | -서울대 경제학과 -한국투자증권(2001~2006)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06~ 현재) |

주1)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단위 : %)

| 기간 | 최근 1년차 | 최근 2년차 | 최근 3년차 | 최근 4년차 | 최근 5년차 |
|------|-----------------------|-----------------------|--------|--------|--------|
| | 13.05.01 ~14.04.30 | 13.03.06 ~13.04.30 | | | |
| 펀드 | 4.02 | | | | |
| 비교지수 | 2.10 | | | | |

1. 보수 및 수수료

-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명칭 (종류) | 지급비율(연간, %) | | | | | | | | |
|------------|-------------------|---------|------------|--------------------|-------|--------|--------------|------------|-----------|
| | 집합투자 업자보수 | 판매회사 보수 | 수탁회사 보수 |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 총보수 | 기타비용 | 총보수+ 기타비용 | 증권거래 비용 | |
| 구분 없음 | 0.25 | 0.5 | 0.03 | 0.018 | 0.798 | 0.0149 | 0.8129 | 0.1499 | |
| 지급시기 | 최초보수계산일로부터 매 3 개월 | | | | | |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년도 : 2013.03.06~2014.03.05]
-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년도 : 2013.03.06~2014.03.05]
- 주 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천원)

| 종류 | 1년 | 3년 | 5년 | 10년 |
|-------|----|-----|-----|-------|
| 구분 없음 | 83 | 261 | 453 | 1,008 |

- 주)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과세

| | |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4 및 동법 시행령 제 92 조의 13 |
| 가입자격 |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가입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일 것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② ①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500 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가입기간 | 2015.12.31.까지 |
| 가입방법 | 적립식 |
| 저축계약기간 | (계약기간이)7 년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지,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및 제 3 자에게의 양도가 없을 것 다만, 만기 7 년 도래시 1 회에 한하여 3 년 이내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 가능(최대 10 년) |
| 가입한도 | 분기별 300 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함) |
| 세제혜택 | 계약기간 7 년 유지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다만, 최초 계약기간 7 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 등의 인출시 연장한 기간 및 연장 이전 7 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재형저축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1.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

| | |
|---|---|
| |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10)가 부과됨 |
| 감면세액추징 | <p>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제 3 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다만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 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특별해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 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특별해지하려는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4 및 동법 시행령 제 92 조의 13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재형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절차

(1)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 구분 | 주요 내용 |
|--------------------|--|
|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 본점 및 판매회사 본·지점에 공고·게시, - 집합투자업자(www.koreavalueasset.com)·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

(2) 매입 및 환매 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분 | 오후 5시 이전 | 오후 5시 경과후 |
|-----------|---|--|
| 매입 | <p>-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 </p> | <p>-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 </p> |
| 환매 | <p>-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p> <p style="text-align: center;"> </p> | <p>-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D+4)에 환매대금 지급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 </p> |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원)

| 대차대조표 | | | |
|----------|----------------|--|--|
| 항 목 | 제 1 기 | | |
| | (2014.03.05) | | |
| 운용자산 | 37,852,620,236 | | |
| 증권 | 37,608,872,104 | | |
| 파생상품 | 0 | | |
| 부동산/실물자산 | 0 | | |
| 현금 및 예치금 | 243,748,132 | | |
| 기타 운용자산 | 0 | | |
| 기타자산 | 806,945,418 | | |
| 자산총계 | 38,659,565,654 | | |
| 운용부채 | 0 | | |
| 기타부채 | 504,165,137 | | |
| 부채총계 | 504,165,137 | | |
| 원본 | 35,579,943,041 | | |
| 수익조정금 | 1,454,264,250 | | |
| 이익잉여금 | 1,121,193,226 | | |
| 자본총계 | 38,155,400,517 | | |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 | | |
|------------|---------------------------|--|--|
| 항 목 | 제 1 기 | | |
| | (2013.03.06~2014.03.05) | | |
| 운용수익 | 1,297,251,155 | | |
| 이자수익 | 518,428,183 | | |
| 배당수익 | 98,466,430 | | |
| 매매/평가차익(손) | 680,356,542 | | |
| 기타수익 | 0 | | |
| 운용비용 | 167,861,872 | | |
| 관련회사 보수 | 167,861,872 | | |
| 매매수수료 | 0 | | |
| 기타비용 | 8,196,057 | | |
| 당기순이익 | 1,121,193,226 | | |
| 매매회전율 | 172.91 | | |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결산 분배금이 있는 경우 계정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요약 재무정보의 부채 및 자본 항목과 "나.대차대조표"의 금액이 상이합니다.